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2

발의연월일: 2025. 1. 3.

발 의 자:임호선·안호영·이춘석

김주영 • 안태준 • 박지원

이병진 · 정준호 · 김영호

김동아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단위와 조합법인·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 으로 함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 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가구에 속하는 구성원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또는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목적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③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가구에 속하는 구성원이 「부
	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
	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또는 직
	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하거나 양식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목적물이 동일한 경
	우에는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u>④</u> ~ <u>⑧</u> (생 략)	<u>⑤</u> ~ <u>⑨</u> (현행 제4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